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넥스젠파이낸스대부

2. 조치일 : 2022. 8. 10.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개선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업무 미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7 등에 따라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고 있으나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점검 및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교육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가 상당함에도 보조조직 없이 과장 직위의 보호감시인 1인이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업무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호감시인의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대상·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식 문서로 기록·보관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업무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정 조직 및 보호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조직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채권추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미흡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21.4월) 제31조(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에 따라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를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체 운영 중인 채권추심관리 전산시스템상 추심횟수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아 추심업무담당자가 착오로 채권별 1일 2회를 초과하여 채무자를 접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추심업무담당자가 채권별로 1일 채무자를 접촉한 누적 횟수를 관리하고, 추심업무담당자가 채권별로 1일 2회 초과하여 채무자를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차단하게 하는 등 채권추심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